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檢討報告書

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

박성호 의원이 1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징계심사가 "윤리특별위원회"소관 업무가 되어 "징계자격특별위원회"관련 조항 문구의 개정이 요구되고, 회의록을 책자에서 시디-롬으로 변경 제작함에 따라 자구정정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고자, 우리구 회의 규칙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내용

- 가. 의안 표결방법은 기립표결 방법을 우선하고 기타 필요에 따라 전자 투표에 의한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 방법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 조제1항 및 제2항)
- 나. 회의록에 표결 수 만 기재하던 것을 표결수, 기명투표의 경우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까지 기재토록 함(안 제44조제1항제11호)
- 다. 발언자가 자구정정을 요구할 시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 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을 "임시 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수정 함

(안 제46조제1항)

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관련 조항 문구를 수정 함(안 제75조, 제79조제1항·제2항·제4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신설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설 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관련 조항 문구를 수정하고
- 우리구 의회 발전을 위한 전자투표제와 전자회의록 도입, 회의록 게재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제·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자회의록 자구의 정정을, 회의록을 책자로 발간할 할 때는 다음 날오후 5시까지에서 시디-롬으로 제작할 때는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 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에 맞게 종전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종이 없는 사무실 환경 추진으로 업무실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2006. 9. 8

보고자: 김 완 섭